

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각국의 공탁제도에 관한 연구			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	성 명	박 정 호
연구자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권영준 교수)			
연구기간	2016. 7. 1. ~ 2016. 11. 30. (5개월)			
연구금액	49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	
계약방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<input type="checkbox"/>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수의계약			
연구결과	○독일·미국·프랑스·일본의 공탁 관련 기관과 공탁의 종류, 공탁업무의 처리 과정, 공탁금의 운용 및 국고귀속제도 등을 비교·분석하고, 공탁제도 운영에 있어 각 국가별 특이사항을 소개함 ○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탁 유형의 다양화와 공탁금 국고귀속 억제 방안 등 우리 공탁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			
평가항목	상	중	하	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√			
내용의 완결성	√		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√			
참고문헌의 충실도		√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√			
제출기간 준수	√		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√		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√			
평과 결과 총평	별지와 같음			
공개 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공개			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1호 <input type="checkbox"/> 2호 <input type="checkbox"/> 3호 <input type="checkbox"/> 4호 <input type="checkbox"/> 5호 <input type="checkbox"/> 6호 <input type="checkbox"/> 7호 <input type="checkbox"/> 8호			
2016. 12. 19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			

평가 결과 총평

- 독일, 미국, 프랑스, 일본의 공탁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비교법적 연구의 기틀 마련
 - 각국의 공탁절차를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①연혁, ②공탁기관 및 공탁의 종류, ③공탁업무의 처리과정, ④공탁금의 운용, ⑤공탁금 국고귀속의 5가지 주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비교·분석함
 - 특히 우리 공탁제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, 일본에 대한 조사는 연구원이 현지 공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 법령과 문헌을 조사·정리한 것이므로 향후 공탁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- 각국의 특유한 공탁제도나 도입 가능한 새로운 공탁유형을 소개하여 우리 제도에 시사점 제시
 - 프랑스에서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연예산업에 종사하면서 얻는 수익을 법정 대리인이 함부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그 보수의 일부를 공탁하도록 함 ⇨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 있음
 - 우리나라는 공직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공직 선거 후보자가 기탁금을 공탁하도록 함 ⇨ 기탁금의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 필요성 있음
 - 새로운 공탁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중도금을 공탁하고, 향후 법원에서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도인이 중도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(Escrow) 제도 소개 ⇨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도입 필요성 있음
- 단순히 학문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함
 - 우리 공탁제도 운영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휴면 공탁금의 국고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독일·프랑스의 장기 소멸시효기간(30년) 도입과 미국의 지급청구 없는 재산(Unclaimed Property)에 대한 지급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⇨ 향후 제도 개선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